#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35

발의연월일: 2020. 12. 2.

발 의 자 : 양금희 · 한무경 · 태영호

이철규・권명호・김정재

권은희 · 서병수 · 김영식

최승재 • 하태경 의원

(11인)

####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 를 생산하는 디지털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CT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디지털 전환의 산업 출현이 저조한 상황이며, 현행 법령으로는 기업의 기존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기에는 지원책 등에 한계가 있어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는 디지털 시스템 기술의 발전과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AI 국가전략 추진, 산업 지능화, 스마트 펙토리 고도화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기술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이들 정책추진을 모두 아우르는 범 부처적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근본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4차 산업혁명 확산과 글로벌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응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함(안 제5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기업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 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업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 를 둠(안 제8조).
- 마. 기업디지털전환 기업은 기업디지털전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 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디지털전환에 관한 기술·장비, 제품·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상을 지원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사. 정부는 기업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디지털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 아. 기업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안 제16조).

###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4차 산업혁명 확산과 글로벌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응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 2. "기업디지털전환"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기업 활동에 적용하여 기업 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은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디지털전환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법의 목적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업디지털전환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기업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3. 기업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사항
  - 4. 기업디지털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5. 기업디지털전환에 대한 정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기업디지털전환 관련 재원조달 및 분담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기업디지털전환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제8조에 따른 기업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 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 1. 기업디지털전환 관련 분야별 수요 · 생산 및 매출에 관한 사항
  - 2. 기업디지털전환 관련 분야별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 3. 기업디지털전환과 관련된 국내·외 시장동향에 관한 사항

- 4. 기업디지털전환 관련 산업 경쟁력 및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 5. 기업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인력현황
- 6. 기업디지털전환 관련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7. 기업디지털전환 관련 국내 기술수준 등에 관한 사항
- 8. 기업디지털전환 관련 분야별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디지털전환을 위한 실태조사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업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 ① 기업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으로 기업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업디지털전환을 위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기업디지털전환을의 효율적 추진 및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에 관한 사항
  - 3. 기업디지털전환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등 민간분야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기업디지털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디지털전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추진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기업디지털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 다.
- ⑥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디지털전환 기업은 기업디지털전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 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 기업 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 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 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디지털전환 기업은 기업디지털전환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등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 0조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

- 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 조의 요건·절차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디지털전환 기업은 기업디지털전환 추진을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또는 제90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 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 ② 제9조에 따른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디지 털전환에 관한 기술·장비, 제품·서비스(이하"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기술등의 관련 실태 · 통계 조사
  - 2. 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
  - 3. 개발된 기술등의 평가 및 활용
  - 4. 기술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 5. 그 밖에 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2조(기업디지털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디지털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1. 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3. 기업디지털전환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 4. 기업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기업디지털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 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업디지털전환 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기업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디지 털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디지털 전환 기업 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

-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창업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디지털전 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 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디지털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디지털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기업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제17조(기업디지털전환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은 기업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디지털전환 우수기업 및 기업디지털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기업디지털전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기업디지털전환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기업디지털전환 우수기업등에 대한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디지털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